

논문심사규정

2023. 03. 23. 제정
2024. 10. 21.

1.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핵의학기술」(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핵의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하되, 소속기관 및 금전적 이해관계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학회의 외부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위원 혹은 저자와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각 편집위원회 메일(kjnmt1977@gmail.com)로 이 사실을 고지한다. 이 사실을 인지한 편집위원회는 즉각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3.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그 분야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심사자는 메일을 통해 심사자 선정을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4. 학회임원 및 편집 위원 등이 투고한 논문은 그들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심사자(임원 및 편집위원제외) 혹은 외부 전문가에 심사를 의뢰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종설(Review Article)과 기타(Et Cetera)의 경우에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 중에서 하나로만 판정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게재가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투고자가 충실히 수정 및 보완하여 재제출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과정을 통해 재심사 없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원고가 학술적 가치와 연구 윤리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9. 심사위원 2명 모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 본 학술지에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면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최종 결정하며,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진한다.
10.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심사기간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로 한다.

11.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회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2.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투고자에게 온라인으로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13.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의 이메일(kjnmt1977@gmail.com)로 논리적 근거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자의 이의를 수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이의 신청자의 이메일로 공개한다.
14. 원고의 수정과 보완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4주 이내에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을 본 학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 철회로 간주하며, 제출 지연에 따른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한다.
15.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수정 및 보완 요청 후의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